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안철수 · 김 건
박충권 · 신성범 · 김선교
이인선 · 강선영 · 김민전
박준태 · 곽규택 · 이상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,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.

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, 신진연구자의 도전적·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·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·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

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,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8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4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(이하 “신진연구자”라 한다)의 창의적·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유형과”를 “유형, 도전적·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,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·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,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) ① ~ ⑦ (생략)	제3조(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⑧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(이하 “신진연구자”라 한다)의 창의적·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⑧ ~ ⑩ (생략)	⑨ ~ ⑪ (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
제12조(표준 성과지표의 제공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·응용연구·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	제12조(표준 성과지표의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유형, 도전적·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, 신진연구자 등 연

공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② ~ ④ (생략)	<u>구자의 특성 및</u>----- -----. <u>이 경우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</u> <u>도전적·장기적 연구개발과제</u> <u>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</u> <u>과급효과, 동료평가 등을 중심</u> <u>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</u> <u>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